

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512호

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42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5. 12. 시행)됨에 따라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동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참조: 위생용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

○ 전화 : 043-719-1741, 팩스 : 043-719-1730

전자우편 : seung76@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4항”을 “법 제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권한의 위임)”을 “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식품위생법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
2.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 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) ----- 법 제8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 화)</u>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<u>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 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 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 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</u>
제13조(<u>권한의 위임</u>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3조(<u>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 탁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식품위생법」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에 위탁한다. 1.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<u>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</u>

	<u>영</u> <u>2.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</u> <u>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</u> <u>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</u>
--	---